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3245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324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208002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엄주범, 인치정, 정성재, 이상준, 최종영, 이종원,
류현석, 양종찬

피고, 피상고인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이현정

판결 선고2020. 9. 24.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2080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부산지방법국토관리청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보증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채무 및 변제자대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